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2470 호

다. 제출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6.

2.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시설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 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나.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단위: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용마터널	현 재 (‘24.7.1)	1,700	2,900	3,800
	신 고 (‘25.4.1)	1,700	3,000	3,800
	증·감	-	+ 100	-
강남순환로	현 재 (‘24.7.1)	1,900	3,200	
	신 고 (‘25.4.1)	1,900	3,300	
	증·감	-	+ 100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 (‘24.7.1)	2,700		
	신 고 (‘25.4.1)	2,800		
	증·감	+ 100		

다. 통행료 조정 : 통행료 동결

-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
통행료 동결 필요

▸ 신월여의지하도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중인 자금 재
조달 공유이익과 상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

라.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붙임-2 참조)

마.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붙임-4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익감소분 보전액(약 135백만원) 재정지원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를 반영하면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금회 통행료를 동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금회 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용마터널’ 중형차량 100원(2,600원→3,000원), ‘강남순환로’ 중형차량 100원(3,200원→3,3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 소형차량 100원(2,700원→2,800원)을 실시협약에 따라 ‘25.4.1일자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표] 참조).

[표] 금회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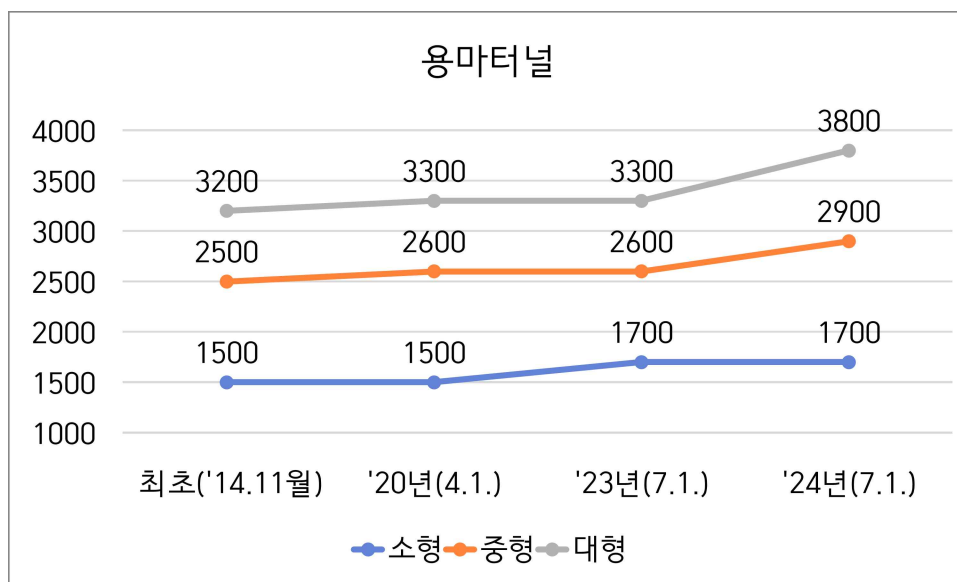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용마터널	현 재('24.7.1)	1,700	2,900	3,800
	신 고('25.4.1)	1,700	3,000	3,800
	증·감	-	+100	-
강남순환로	현 재('24.7.1)	1,900	3,200	
	신 고('25.4.1)	1,900	3,300	
	증·감	-	+100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24.7.1)	2,700		
	신 고('25.4.1)	2,800		
	증·감	+100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재('24.7.1)	2,800		

1)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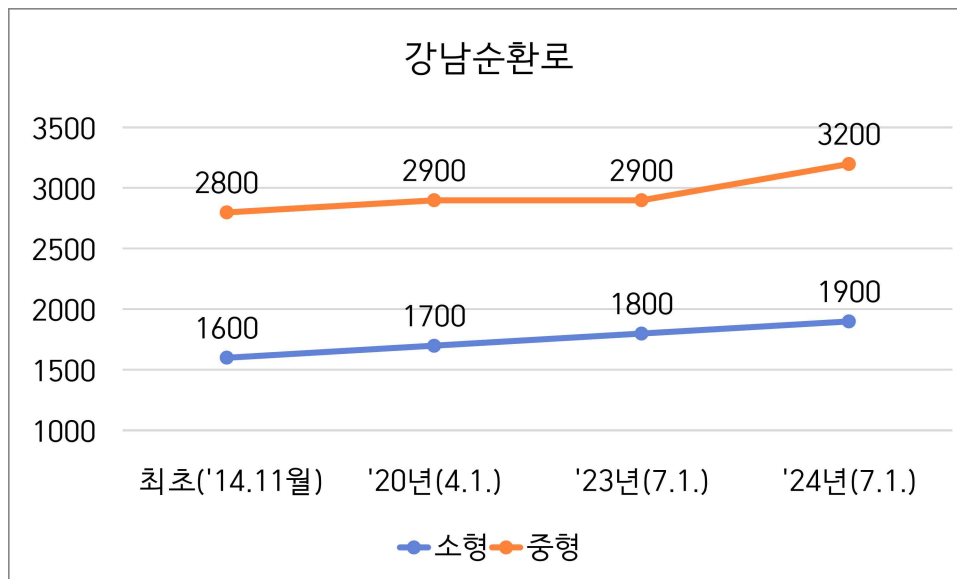
■ 금회 대상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이력

- 먼저, ‘용마터널’의 경우 ‘14.11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500원, 중형차량 2,500원, 대형차량 3,200원으로 결정된 후 소형차량 1회(‘23.7.1일자 200원 증), 중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300원 증), 대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5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각각 1,700원(소형), 2,900원(중형), 3,800원(대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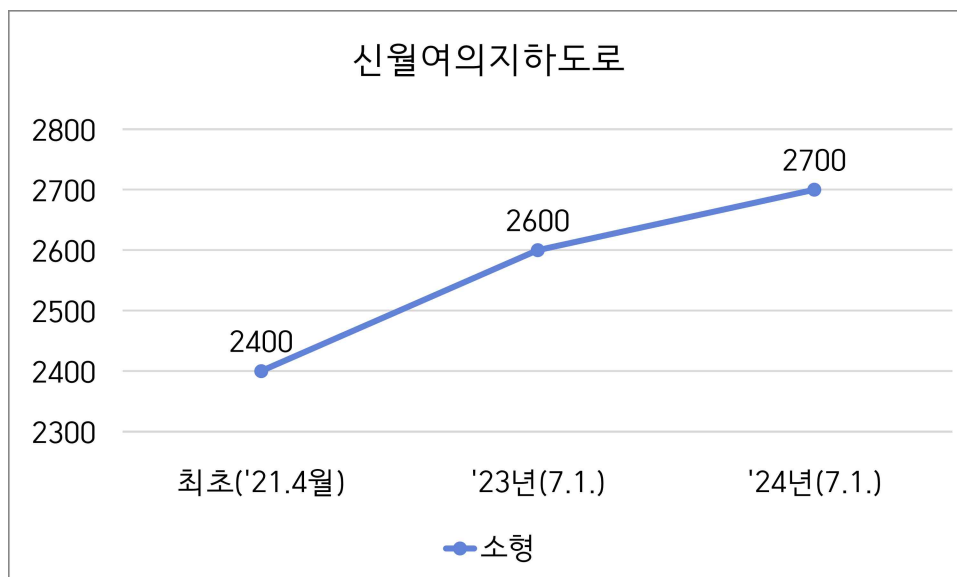
[그림] 용마터널 요금 인상

- ‘강남순환로’의 경우는 ‘16.7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600원, 중형차량 2,800원으로 결정된 후 소형차량 3회(‘20.4.1일자 100원 증, ‘23.7.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100원 증), 중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3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각각 1,900원(소형), 3,200원(중형)임.



[그림] 강남순환로 요금 인상

- 다음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21.4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2,400원으로 결정된 후 2회(‘23.7.1일자 200원 증, ‘24.7.1일자 1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2,700원임.



[그림]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인상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는 각각의 실시협약조건²⁾에 따른 것으로, 기준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 시점부터 2023.12월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 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임([표] 참조).

[표] 2025년 통행료 산정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A)		1,000. ⁰⁰	1,700. ⁰⁰	2,200. ⁰⁰	1,067. ⁴⁸	1,814. ⁷²	1,862.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B)		174. ⁷⁹ %			180. ⁵² %		149. ²⁰ %
‘25년	산정통행료(C)	1,747. ⁹⁵	2,971. ⁵¹	3,845. ⁴⁸	1,926. ⁹⁸	3,275. ⁸⁸	2,778. ¹²
	적용통행료(D)	1,700	3,000	3,800	1,900	3,300	2,800

※ 통행료 산정 : (A) × (B) = (C),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C) → (D)

-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제3항³⁾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2) ‘용마터널’ 제31조, ‘강남순환로’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제47조

3)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근거하여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 제47조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행료에 대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 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됨.
- 금회 통행료 인상 조정 역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해 옴에 따른 것임.

[표] 실시협약 상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관련 조항

용마터널 실시협약('18.6.8.)	강남순환로 실시협약('14.12.10.)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

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14.5.9.)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① ~ ② (생략) 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예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15.3.11.)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① ~ ② (생략) 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예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안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금회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에 대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인상분만큼을 통행료 징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서울시 재정 또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활용 등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o 2025년 경제정책방향 ('25.01.02., 기획재정부)

2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 및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1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④ (공공요금 등)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 국민 부담 완화

-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 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조정 근거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

* 착한가격업소(개): ('22) 6,146 → ('24) 10,000 → ('25) 12,000 목표

- 즉, 시는 2025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 약 1억 35백만원(추계액)을 시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표] 통행료 동결 시 재정지원금 추계

구 분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2025년 예상 통행량	통행료 미인상시 재정지원액(예상)	계
용마터널	2,900원→3,000원 (중형)	1,319,455대	131,945,500원	134,795,500원
강남순환로	3,200원→3,300원 (중형)	285,000대	2,850,000원	

-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이익과의 상계 처리를 통해 사업시행자 수익감소분을 보전 하겠다는 입장임.
- 이처럼 ‘25.4.1일자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행료의 직접적인 인상 조치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감소분을 재정으로 간접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 최근의 경제불황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민자도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민자도로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시민에게는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 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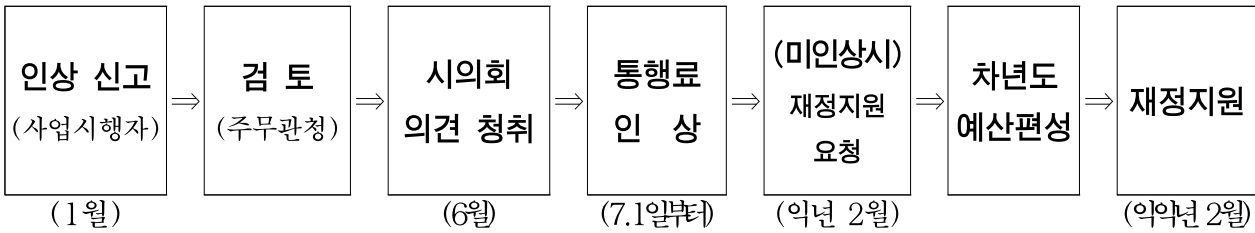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금회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동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형평성, 파급성과 효과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됨.

[붙임]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서울시)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

1. 통행료 인상 절차 및 산정방법

○ 인상 절차



○ 통행료 산정방법(100원 단위 절상 또는 절하)

- 통행료 = 기준 통행료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2. 2024년 통행료 산출내역

【용마터널】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1.4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1.45%, 중형·대형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00. ⁰⁰	1,700. ⁰⁰	2,200.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71. ⁴⁵ %		
'01.04월 소비자물가지수*		65. ⁷⁴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⁷¹		
2024년	산정통행료	1,714. ⁴⁸	2,914. ⁸²	3,772. ⁸⁶
	적용통행료	1,700	2,900	3,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강남순환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0.11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7.06%, 모든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67. ⁴⁸	1,814. ⁷²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77. ⁰⁶ %	
'00.11월 소비자물가지수*		63. ⁶⁶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⁷¹	
2024년	산정통행료	1,890. ⁰⁹	3,213. ¹⁶
	적용통행료	1,900	3,2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신월여의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2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6.34%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862.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6. ³⁴ %
'07.02월 소비자물가지수*		77. ⁰²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⁷¹
2024년	산정통행료	2,724. ⁹³
	적용통행료	2,7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서부간선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7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4.25%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923. ⁶⁶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4. ²⁵ %
'07.07월 소비자물가지수*		78. ¹³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⁷¹
2024년	산정통행료	2,774. ⁹²
	적용통행료	2,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3. 차종 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소 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중 형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2축 이하, 2.5톤 이상~10톤 이하 화물차
대 형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4.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

가. 면제 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구 분	면제 대상
유료도로법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차량 중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서울시	○ 시·구 제설차량(제설기간, 11.15~익년 3.15) ○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

나. 감면 대상(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0%
전기자동차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50%
장애인 차량	○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국가유공자 차량	○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5·18 민주유공자	○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비영업용 차량(시행규칙 제5조제4항)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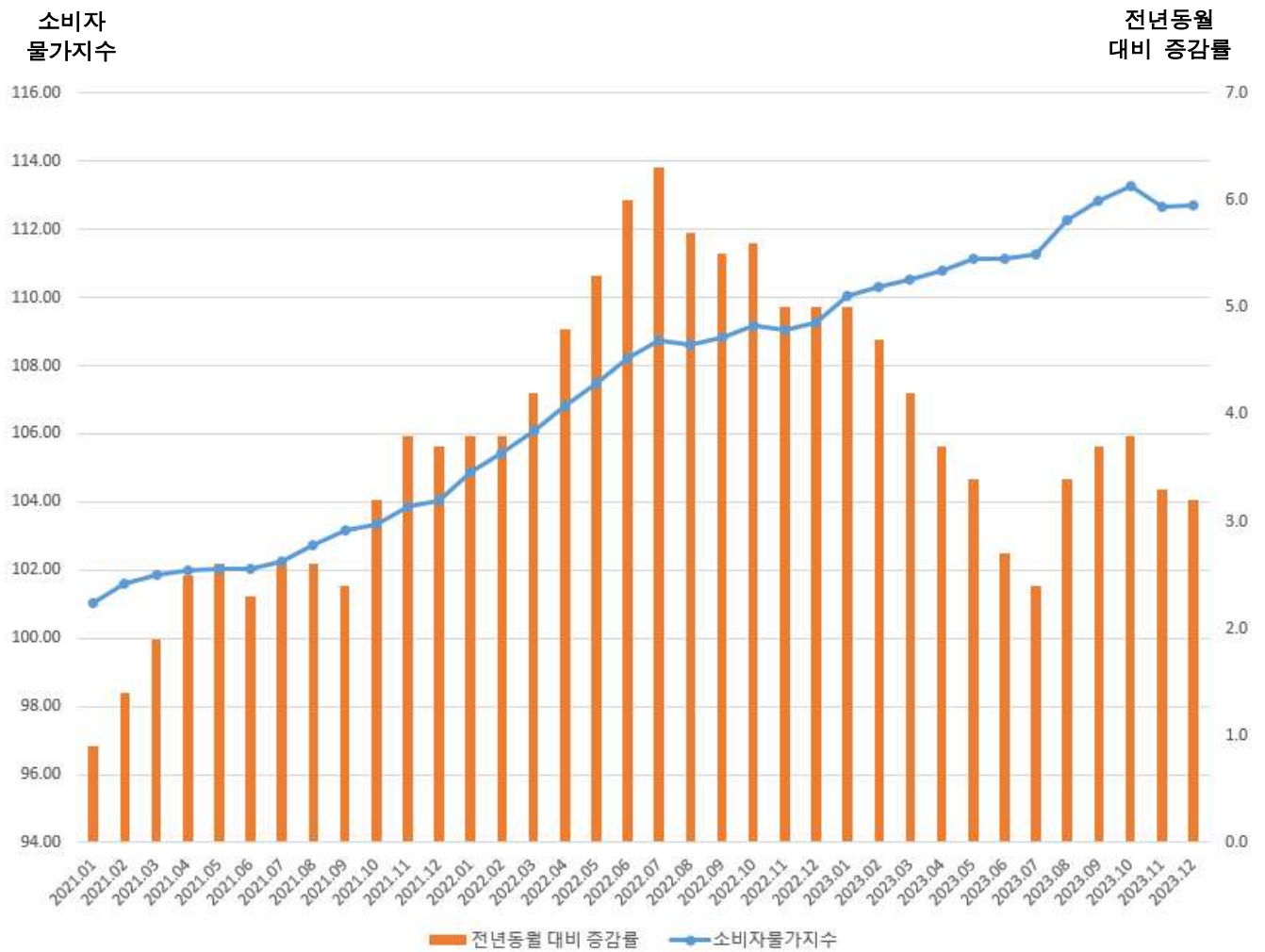
-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관리청	시 설 명	연 장 (km)	통행요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96	소형·중형 : 2,500원
경기도	수석~호평	11.2	소형 : 1,600원, 중형 : 3,200원 대형 : 4,000원
경기도	일산대교	1.84	소형 : 1,200원, 중형 : 1,800원 대형 : 2,400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3.69	소형 : 3,400원, 중형 : 5,800원 대형 : 7,500원
대구광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로)	10.44	소형 : 1,700원, 대형 : 2,400원
경상남도	마창대교	1.70	소형 : 2,500원, 중형 : 3,100원 대형 : 3,800원
경상남도	창원~부산	22.48	소형 : 2,200원, 중형 : 3,200원 대형 : 4,200원

※ 통행료는 2023.12.31. 기준임

6.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